

2005년도 ESCO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류기준 실장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2004년도는 사상초유의 고유가 사태를 맞아 유래 없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ESCO업계는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각종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에 ESCO가 선두에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ESCO들의 숙원이었던 ESCO 고정금리 지원이율을 5.25%에서 3.0%로 인하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ESCO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05년도에 달라지는 ESCO지원제도는前述한 정부의 지원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용 자금신청제도 도입

제일 큰 변화는 ESCO자금지원 신청에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서류제출에 의한 자금신청절차를 인터넷기반을 이용한 자금신청방식으로 혁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CO는 공단에 내방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자금추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인터넷자금신청제도와 관련하여 모든 자금추천업무를 공단 본사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단 각 시·도지사에서 추천하던 5억원 미만의 조명 개체사업과 폐열이용 교환·가열장치 설치사업을 본사에서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방식

으로 추천제도가 개선되었다.

》지원규모확대

ESCO자금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동일투자자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했던 지원범위를 동일투자자 당 최대 200억원까지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그동안 신설로도 지원하였던 일부 대상시설을 대폭 축소하여 열병합발전시설,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만의 신설시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변경하였다. 이는 ESCO사업의 취지인 시설개체에 따른 에너지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개념에 부합되도록 지원방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대금지급 여부 상관없이 자금추천

기타 지원지침 변경사항은 추천일 이전에 대금지급이 추천대상액의 50%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자금추천이 제외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대금지급여부에 상관없이 자금추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추천서 발급 후 최초 인출시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자금인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추천 후 자금 미인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신설되어 사업자의 규칙으로 연내 추천액의 50%이상 미인출시 차년도 자금지원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등 7개 품목이 신규 자금지원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순산소식 용해로 등 10개 품목이 지원신청

제일 큰 변화는 ESCO자금지원 신청에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서류제출에 의한 자금신청절차를 인터넷기반을 이용한 자금신청방식으로 혁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ESCO업체는 공단에 내방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편리하게 자금 추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적 미비 등의 사유로 자금지원시설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으며, ESCO제도와 지원사업에도 큰 이슈가 많다.

》2005 ESCO-Mart 개최

격년제로 시행되는 ESCO-Mart 행사가 2005년도 9월 말에 개최된다.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만남의 장인 ESCO-Mart는 매번 개최를 거듭함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ESCO사업홍보 및 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를 해왔다.

올해도 전해와 같이 에너지절약전시회와 공동으로 개최 할 계획이며, 다양한 투자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즉석에서 투자사업 상담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ESCO 인증제도 시행

2006년부터 공공부문 적격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우수ESCO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05년도 상반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최초의 우수ESCO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우수ESCO 인증제도를 통해 업체간 견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ESCO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적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4호에 의거 2005년 9월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ESCO 등록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SCO업체 내실화 및 ESCO사업 견전화에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

